

보도시점 2024. 2.6.(화) 조간 배포 2024. 2. 5.(월) 09:00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 ✓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및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
- ✓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둘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2.1~9월 : 140건 → '23.1~9월 : 376건 (전년동기 대비 약 2.7배 증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 ①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시 가능하다고 안내
- ②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착수금을 요구
- ③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상담을 해준다면서 거마비를 요구

셋째,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2.1.) 참고

한편,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붙임4)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붙임5).

둘째,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휴대폰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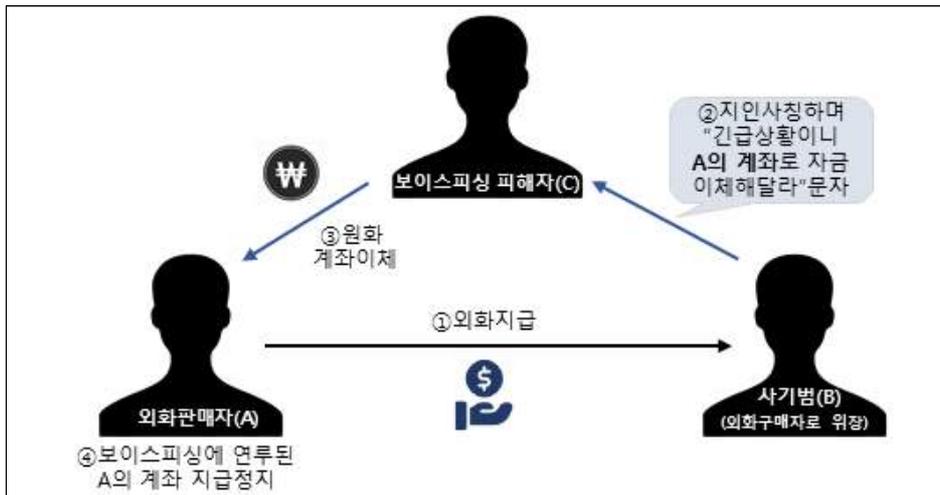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붙임7)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①개인정보 노출 등록, ②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③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붙임6).

셋째,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 개인간 외화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과정(예시) >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 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임1]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붙임2]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방법
- [붙임3]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붙임4]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 [붙임5] 스미싱, 메신저피싱 및 환전사기 피해 사례
- [붙임6]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 [붙임7] 은행별 콜센터 현황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전 수 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남 진 호 (02-2100-2523)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 수 호 (02-2100-2976)
		담당자	사무관 남 명 호 (02-2100-2974)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홍 석 린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박 재 민 (02-3145-8129)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책임자	국 장 임 정 환 (02-3145-8150)
		담당자	팀 장 장 종 현 (02-3145-8140)



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신청 화면 >



3.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붙임2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신고 가능
- 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신청 화면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2) '불법금융신고센터' 클릭

①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민원·신고

- 민원·신고 +
- e-금융민원센터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제보 상담하기
 - 제보 상담내용 조회

②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민원·신고

- 민원·신고 +
- e-금융민원센터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이용안내
 - 제보하기
 - 제보내역조회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민원·신고

- 민원·신고 +
- e-금융민원센터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이용안내
 - 피해신고
 - 신고내역조회

붙임3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정부는 저신용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 참고

☑️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하세요!

-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 ☹️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SNS·전화·문자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세요!

- ☹️ 문자메시지, 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32 (→3번) 로 연락주세요!

- ☹️ 불법금융광고 또는 불법업자로 의심은 되나, 대응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행동요령 및 피해구제 방안 등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 금감원은 피해자가 불법광고로 인한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연계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청

- ☹️ 또한,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녹취, SNS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사칭 사례	공공기관 사칭 사례
<p>설날 선물세트가 내일 배송 준비중입니다. 정확한 주소지 (도로명) 기재해주세요 jul.im/yKl</p>	<p>교통법규위반으로 안내 [청구 명령] 발부되었습니다. 조회 "http://www.coutcar.co.kr"</p>
<p>[OO 통운] 배송불가(주소불명). 수취정보 변경/확인해주세요 http://twr.kr/hEeN</p>	<p>[교통 위반 알림] 귀하의 위반 사실 및 [납부안내] 참조 gos.carmoas.com</p>
<p>쿠팡맨 박□□입니다. 주소지 오류 배송물품 지연중입니다 담당자 링크 http://zrr.kr/FGfn</p>	<p>[WEB발신] 국민건강보험무료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검진 받으세요 t.mfle2.com 1577-1000</p>
지인 사칭 사례	금융 사칭 사례
<p>설날에 찾아봐야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청롱의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zxy.kr/0ep</p>	<p>○○은행 [WEB발신] (광고) "행복을 함께 나누며 고객과 항상 소통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p> <p>고객님 안녕하세요 당행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출 한도를 안내드렸었는데 신청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안내문자드립니다. 확인후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상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너스 부여 한도 발행 가능 · 서민금융 맞춤형대출 · 고금리 대환자금 및 통합대출 (6개월 이내 휴·폐업 영세소상공인 대상인 경우 별도 당행 심사기준 적용) <p>-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금액 : 1000만원~최대 2억원 · 상품금리 : 연 1.38%~6.32% <p>자금 소진시 변경 또는 조기마감</p> <p>상담신청 : 02-573-0410</p> <p>※ 동시간 상담이 많을 경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3-C1h-01531호</p> <p>무료거부 0801560054</p>
<p>아버지께서 어제 저녁여섯시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p>  <p>초대장카드 t.ly</p>	

스미싱

- 피해자는 “**범칙금 확인 고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 내 링크(URL)을 클릭하였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18회에 걸쳐 687만여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수의 사기이용계좌로 **27백만원의 자금을 이체**
- 사기범은 지인을 사칭하여 허위의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저녁 악성 코드가 담긴 부고장.apk 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은행계좌의 **사용권한을 취득**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수의 대포계좌로 총 **180만원 상당의 자금을 이체**

메신저 피싱

- 사기범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증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전달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어권한을 얻어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문화상품권 5만원권 18매를 99만원에 결제**하였고 **송금 및 CD기기를 통해 890만원을 출금**

환전 사기

- 피해자는 최근 일본 오사카 여행에서 돌아와 남은 엔화 20만 엔을 팔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을 게시. 그날 저녁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를 인근 지하철역에서 만나 엔화를 전달한 뒤 자신의 계좌로 **175만원을 입금**받았으나, 며칠 후 점심시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거래은행에 문의해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엔화 판매대금으로 입금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됨

1 계좌 지급정지

-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2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 여부 확인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내계좌지급정지)

3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s.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 * 엠세이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연번	은행명	콜센터
1	국민은행	1588-9999
2	신한은행	1577-8000
3	하나은행	1599-1111
4	우리은행	1588-5000
5	대구은행	1566-5050
6	부산은행	1588-6200
7	전북은행	1588-4477
8	광주은행	1588-3388
9	경남은행	1600-8585
10	제주은행	1588-0079
11	농협은행	1588-2100
12	중소기업은행	1588-2588
13	한국산업은행	1588-1500
14	수협은행	1588-1515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88-1599
16	한국씨티은행	1588-7000
17	케이뱅크	1522-1000
18	카카오뱅크	1599-3333
19	토스뱅크	1661-7654
20	신협	1566-6000
21	새마을금고	080-890-0201
22	농협중앙회	1661-3000
23	수협중앙회	1588-1515
24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